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57

발의연월일: 2021. 5. 12.

발 의 자: 강민정·김홍걸·류호정

강은미 · 김승원 · 이채익

박성준 • 이수진॥ • 김의겸

용혜인 · 송재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5월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이하 병원학교라 칭함)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학교(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의 연속성과 또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결손과 출석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는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순회교육 관련 조항을 통해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 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 ·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학급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장에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 ·치유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법률 제 호

"하여야 한다"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학급을 설치·운영하는"을 "학급 설치·운영, 담당교사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로, "할 수 있다"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 ③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	4
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u>학급 설치·운영, 담당교사</u>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u>배치</u>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	
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심리
<u>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
•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	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u>하여야 한다</u>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